

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4. 18.>

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(제26조제2항 관련)

적용 지역	지역계수	
	공 유 수 면 의 매립을 수반 하지 않는 경우	공 유 수 면 의 매립을 수반 하는 경우
1.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 및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른 어항	2	2
2.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	3	6
3. 해양보호구역,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,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	20	40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	6	12

비고: 제1호와 제3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지역계수를 적용한다.